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46
------	-----

2019. 2. 25.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29일, 경만선 의원 외 1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2.25.)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경만선 의원)

1.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으로 법제처 등의 기관에서는 지속적

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법률 전문가 중심의 문화를 시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의 규정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본 입안 취지 또한 제명의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하도록 함 (안 제2조~제55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한글 어문 규정에 따른 정확한 띄어쓰기를 제명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자치법규 일괄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변경, 관계 법령 개정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모두 조례에 반영하기 어려울 때는, 개정취지가 같거나 비교적 사소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정비 형식의 조례안을 통해 입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음.
- 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일괄정비안의 목적에 부합하나, 최근 일괄정비안의 발의 건수가 증대되는 추세인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 고유의 심사 권한 침해 방지를 위해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일괄정비 사안

- 조례안은 각 조의 조례 제명을 “조례” 앞에서 반드시 띄어 쓰도록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지원조례” → “지원∨조례”, “기본조례” → “기본∨조례” 등

-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음.
- 또한 법제처의 ‘법령이름 띄어쓰기 기준’ 상 법령 이름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으며,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은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는 ‘법령이름 띄어쓰기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뿐,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동일한 문구의 조례 제명에도 다른 띄어쓰기가 다수 존재해¹⁾ 혼란을 초래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또한 조례안에 대해 제명의 용어나 의미가 변경되지 않아 이에 따른 혼란 발생 소지가 적다고 판단, 일괄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밖에 “조례” 앞 띄어쓰기 외 안 제25조, 제30조, 제43조, 제49

1)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등

조는 다음과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쓰고자 하는 것으로, 어문 규정의 일반 원칙과 시민들의 가독성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안 제25조	서울특별시 <u>수도시설이설</u>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u>수도시설 이설</u>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안 제30조	서울특별시 <u>시세감면조례</u>	서울특별시 <u>시세 감면 조례</u>
안 제43조	서울특별시 <u>주거기본조례</u>	서울특별시 <u>주거 기본 조례</u>
안 제49조	서울특별시 <u>택시기본 조례</u>	서울특별시 <u>택시 기본 조례</u>

- 한편 조례안을 통해 수정되는 54개의 조례 제명 중 일부는 타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으므로, 인용 조문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일괄정비에 일부 반영하지 못한 조례 제명을 입법 취지에 맞춰 함께 정비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을 통해 수정되는 제명 중 타 조례의 조문 인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제명 띄어쓰기에서 누락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제명을 인용하는 타 조례에 개정사항과 제명 띄어쓰기에서 누락된 내용 등을 반영함(안 부칙 제2조 신설).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6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을 통해 수정되는 제명 중 타 조례의 조문 인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제명 띄어쓰기에서 누락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제명을 인용하는 타 조례에 개정사항과 제명 띄어쓰기에서 누락된 내용 등을 반영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하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로,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로 한다.

제20조제5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하며,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3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로 하고,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3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하고,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

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하고, 제47조 중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제26조의2제2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로 하며, 제2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라 한다)”로 하고, 제10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③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④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⑥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⑦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④⑧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

④⑨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하고, 제13조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로 하며, 제3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하며, 제55조제11항 중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u> ① <u>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u>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5조제1항 단서</u> 중 “<u>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u>”를 “<u>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u>”로 한다.</p> <p>② <u>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u>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7조제2호</u> 중 “<u>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u>”를 “<u>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u>”로 한다.</p> <p>③ <u>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u>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6조제3항</u> 및 <u>제13조제4호</u> 중 “<u>서울특별시 경관조례</u>”를 각각 “<u>서울특별시 경관 조례</u>”로 한다.</p> <p>④ <u>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u>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22조제4항</u> 중 “<u>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를 “<u>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u>”로 한다.</p>

⑤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
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
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하며, “서울특별시 하
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
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
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 문화
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로,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로 한다.

제20조제5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각각 “서울특별

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하며,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 정보 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④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관리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3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관리 기본 조례”로 하고,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3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㉞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한다.

㊳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하고,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

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㉞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하고, 제47조 중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제26조의2제2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로 하며, 제2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라 한다)”로 하고, 제10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②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③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④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④8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로 한다.

④9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⑤0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⑤1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⑤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하고, 제13조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 공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로 하며, 제3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하며, 제55조제11항 중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⑤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⑤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경관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공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개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개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개발 기본 조례”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를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하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 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로,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로 한다.

제20조제5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하며,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㉘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3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로 하고,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3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구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하고,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㉝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
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하고, 제47조 중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제26조의2제2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
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로 하며, 제2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라 한다)”로 하고, 제10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⑥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⑦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④⑧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

④⑨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⑤⑩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⑤⑪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⑤⑫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하고, 제13조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로 하며, 제3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하며, 제55조제11항 중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로,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⑤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